

제299회 임시회
환경수자원위원회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(의안번호 제2100호)



2021. 3. 3.

서울특별시의회
신정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양천1)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신 정 호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현행 급수공사비의 계산방법은 정책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나, 실제 급수공사비는 급수관의 인입구경 크기와 공사 연장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과는 직접적 관계가 적습니다.

이에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책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인 ‘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’ 문구를 삭제하고, 정액공사비 예외대상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제한규정인 ‘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’ 문구를 삭제하였고,
정책공사비 예외대상에 ‘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’를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